고양시 고시 제2022-210호

혜음로 및 화랑로 일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등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 구역 내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6.

고 양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시범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그 위치도는 【별표】와 같다.

연번	지정구역	위 치	길이 또는 면적	사업 대상
1	혜음로 일원 (고양동)	○ 덕양구 읍내로 8 ~ 혜음로 68	600미터	도로 구간 양쪽에 접하는 토지 및 건물
2	화랑로 일원 (화전동)	○ 덕양구 화랑로 67 ~ 화랑로 3-1	625미터	도로 구간 양쪽에 접하는 토지 및 건물

제4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호와 2호의 경우 해당 업소의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면에만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굽은 지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의 벽면 이용 간판
2. 2차선 이상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벽면 이용 간판
3.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건물의 1/2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상호 및 브랜드명을 표시한 벽면 이용 간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형 돌출간판 및 이·미용업소 표지등(「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이·미용업소의 표시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판은 총수량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 주변 벽면에 해당 건축물의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종합안내표지판
2.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표시한 건물명 벽면 이용 간판
3.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시장이 시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간판의 경우

④ 광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간판의 교체를 쉽게 하거나,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간판의 설치를 위한 게시틀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⑤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등(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광고물등의 표시는 건축물, 각 업소의 성격, 주변 환경과 인접한 다른 광고물등과 형태·크기·색상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⑦ 모든 광고물등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각적 효과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 디자인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의 경우에 한하여 높이 1미터 이하의 베이스판을 설치 후 그 위에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점포 겸용 주택의 주거 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 층에는 설치하지 말 것. 이 경우 점포 위층 주택의 창문 아랫부분까지는 점포의 벽면으로 볼 수 있다.

③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길이 : 업소 폭 80% 이하에서 최대 10미터 이내로 표시
2. 세로 길이 : 건축물의 3층까지는 60센티미터 이하, 4층 및 5층은 65센티미터 이하로 표시

④ 건물 최상단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입체형으로서 4층 이상 건물 1면(건물명은 2면)의 최상단에 건물명 또는 건물의 1/2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상호 및 브랜드명을 가로 또는 세로로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쓰기의 경우 가로 길이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하, 세로 길이는 4층 건물을 기준으로 65센티미터 이하로서 1층이 증가할 때마다 5센티미터씩 증가하되 최대 1미터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세로쓰기의 경우 가로 길이는 4층 건물을 기준으로 65센티미터 이하로서 1층이 증가할 때마다 5센티미터씩 증가하되 최대 1미터 이하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하에서 최대 8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5층 이하에만 표시 가능하며,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3. 점포 겸용 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 층에는 설치하지 말 것. 이 경우 점포 위층 주택의 창문 아랫부분까지는 점포의 벽면으로 볼 수 있다.
4.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로쓰기할 것
5.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의 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할 것

6.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이하는 1줄로, 10미터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할 것
7. 벽면으로부터 최대 80센티미터(게시틀 포함 100센티미터) 이하로 돌출할 수 있으며, 간판의 세로는 70센티미터 이내,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것.(80센티미터 × 70센티미터 또는 70센티미터 × 80센티미터로 선택 설치 가능)

② 소형돌출간판 및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 돌출간판 1면의 면적은 0.36제곱미터 이하, 두께 0.2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픽토그램 간판(+, 약 등) 및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3.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 내용은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 기호, 문자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기존 광고물의 표시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표시한다.
4.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할 수 없으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0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7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의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업소의 수, 광고물의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부지 내에 지주를 이용한 종합안내표지판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이 경우, 종합안내표지판은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제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은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정하여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세로 크기를 2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자기 업소의 대표자 성명·주소·상호명·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멸 방식의 네온류, 전광류 동영상(LED, LCD, PDP, CRT,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명의 광원(光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심의 등) ① 법, 영,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시 조례, 이 표시방법 등 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표시방법 등 고지)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주에게 이 고시에 따른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표시기간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은 변경 신고 또는 변경 허가 신청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위치도

○ 정비시범구역(구간) 위치도

1. 혜음로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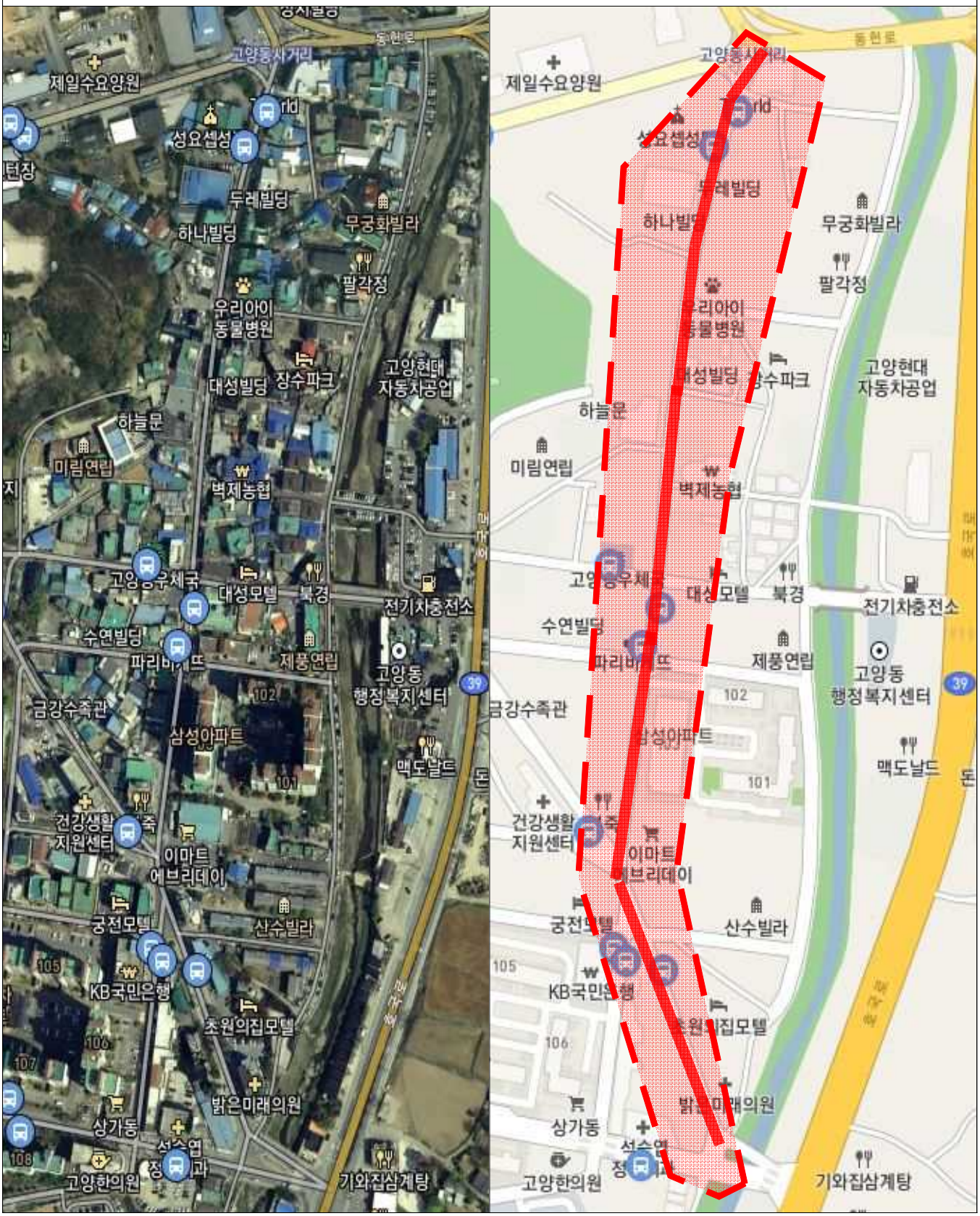

2. 화랑로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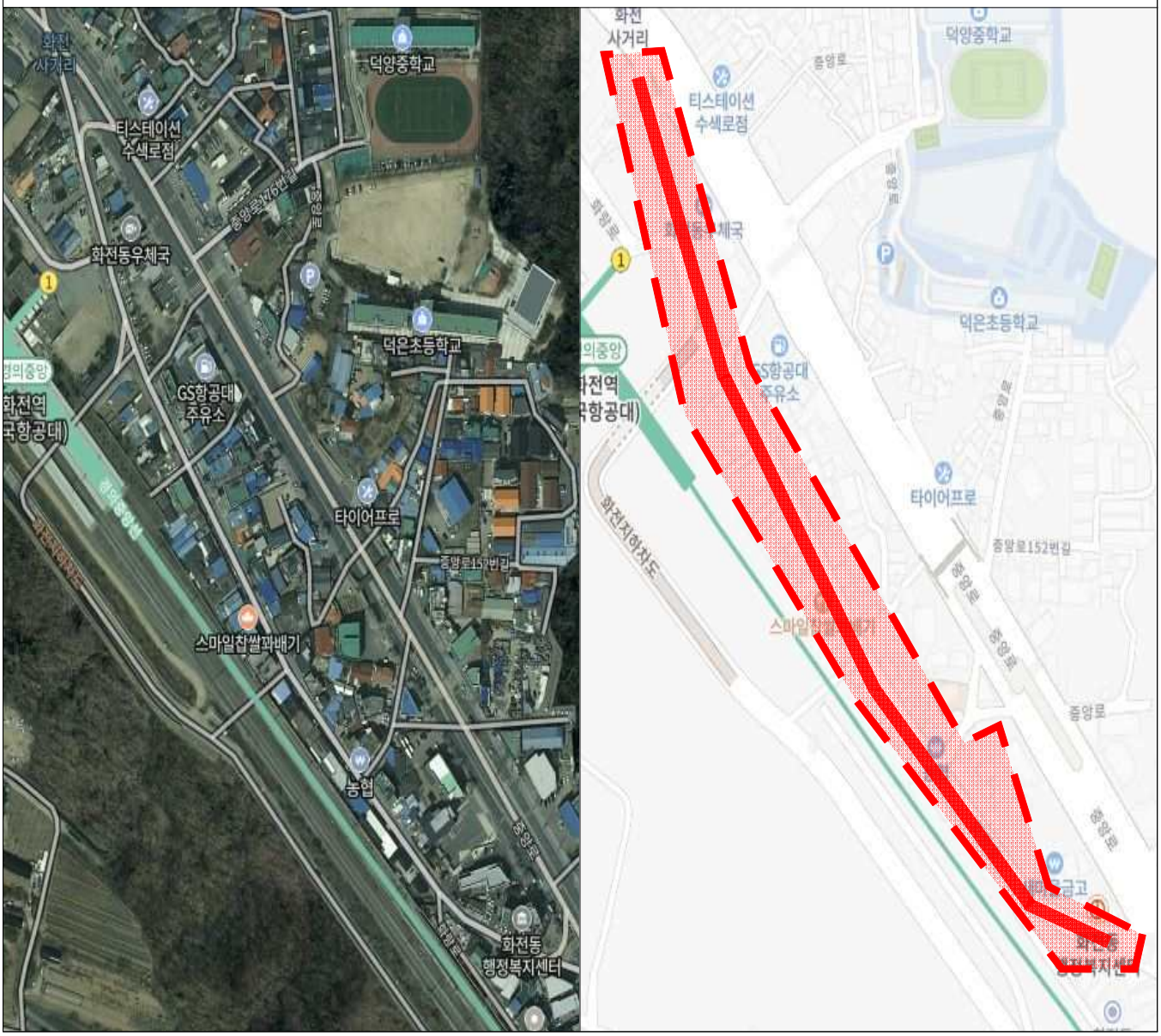

덕양중학교
티스테이션
수색로점
화전동우체국
덕은초등학교
GS항공대
주유소
타이어프로
스마일찹쌀꽈배기
농협
화전동
행정복지센터
화전
사거리
덕양중학교
티스테이션
수색로점
덕은초등학교
타이어프로
화전지하차도